

## ■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배정 세대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이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li> <li>*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li> <li>-입주자처족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li>-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li> <li>-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li> <li>-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li> <li>-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가능</li> <li>※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범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li> <li>② 세대수의 20%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li> <li>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li> </ol> </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li> <li>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한다)를 포함]</li> <li>*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li> <li>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li> <li>-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li> <li>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li> </ol> </li> <li>* 재혼일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li> <li>*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li> <li>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천으로 선정된 자</li> <li>-추천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천으로 결정합니다.</li> </ul> </li> <li>※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 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ul>

## ■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소득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50% (기준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20% (상위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추천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천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은 초과할 경우, 해당 세대 전원의 부동산 가액 기준 3.3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병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 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파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조지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휴직 기간이 없는 경우(적인날인)</li> <li>①재직증명서</li> <li>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li> <li>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li> <li>①재직증명서(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li> <li>②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li> </ul>	①해당 직장 ②세무서 / 해당 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②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해당직장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재직증명서 ②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②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사업자등록증	①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	①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①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세무서 ②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 명세서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해당직장 / 세무서	
기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사업자 확인각서</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건본주택비치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계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를 바라며, 상기자료는 작업 및 편집과정상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